

綠地帶 및 國立公園이 山林經營에 미치는 影響研究

沈 鍾 燮

[林政研究会 報告書 ; 1 ~ 109, 1973]

Influence of Green Tract of Land and National Park on Management of Forestry

Chong Supp Shim

[Rep. of Korean Society of Forest Policy ; 1 ~ 109, 1973]

結 論

1. 現在 劃定되어 있는 公園區域이나 綠地帶區域을 委員會로 하여금 再審査하여 不要不急한 地域(山林)은 遲滯없이 解除措置한다.
이 경우 委員會에는 相當數의 山林專門家가 參與을 前提로 한다.
2. 公園이나 綠地帶에 編入된 山林에 對하여는 建設 部長官의 權限을 山林庁長에게 委任한다.
이 경우 山林庁長은 當該 山林에 對하여 林産物의 生産 및 利用을 許用하는 正常的인 林業經營을 指導하며 同時에 公園이나 綠地帶設定目的도 細心 留意함을 主眼으로 한다.
3. 編入된 山林은 當事者의 願에 依하여 政府가 買収 또는 區域外 山林과 換地하도록 努力한다.
4. 編入區域內 山林이 法의 制約으로 因하여 收益을 올리지 못할 損害에 對하여는 正當한 補償을 保障할 것
5. 區域編入 以前에 山林法에 依換 合法的인 營林事業을 하기 위한 既得權과 投資額은 特히 尊重하여야 하며 投下資本에 對한 回收策이나 輪伐期 相當期間程度의 長期低利 財政支援策이 마련되고 施行되어야 한다.
6. 以上 5 個項目의 具現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現行 關係法令을 代答하고 綿密하게 또 지체없이 改正할 것. ■